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7가합537249(본소), 2017가합54790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 손해배상(자)]

---

##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이영수

변론 종결 2020. 4. 9.

판결 선고 2020. 6. 18.

## 주 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538,851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1.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본소: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596,5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5,381,981원 및 이에 대한 2012. 3.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그랜저HG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한다)에 관하여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3. 3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군포문화예술회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문화예술회관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의 G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하여 H신경외과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부터 2016. 6.까지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상당액  
합계109,596,5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 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가. 재산상 손해

####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1) 후유장해

(가) 정신건강의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8%, 사고일로부터 8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평가표 두부, 뇌, 척수 VI-B-2-a, 직업계수 6 적용]

(나) 신경외과: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17.32%, 사고일로부터 1년 한시장해[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척추손상 III-A-a, 직업계수 5를 적용한 14%,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 척추손상 III-A-c, 직업계수 5를 적용한 24%를 합산한 34.64%, 기왕증 기여도 50% 고려]

#### (2)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 100%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병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 표기재와 같이 H신경외과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아래 표 순번1, 2의 입원기간에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순번 3 내지 10의 입원기간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순번  | 기간초일       | 기간말일       | 입원일수(일) | 의료기관(입원과)        |
|-----|------------|------------|---------|------------------|
| 1   | 2012-03-31 | 2012-04-21 | 22      | H신경외과            |
| 2   | 2012-05-21 | 2012-05-25 | 5       | I병원              |
| 3   | 2012-06-22 | 2012-07-17 | 26      | 서울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
| 4   | 2012-09-08 | 2012-10-12 | 35      | J병원(정신건강의학과)     |
| 5   | 2013-02-25 | 2013-03-16 | 20      | 서울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
| 6   | 2013-09-24 | 2013-11-08 | 46      | 서울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
| 7   | 2014-03-07 | 2014-04-05 | 30      | 서울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
| 8   | 2014-10-07 | 2014-10-24 | 18      | 서울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
| 9   | 2015-04-08 | 2015-05-02 | 25      | 서울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
| 10  | 2015-05-20 | 2015-08-31 | 104     | 서울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
| 합 계 |            |            | 331     |                  |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각 입원기간 중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다만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연속하여 3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본다).

(나) 2012. 3. 31.부터 2013. 3. 30.까지(입원기간 제외): 32.2%

(다) 2013. 3. 31.부터 2020. 3. 30.까지(입원기간 제외): 18%

라) 계산: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46,463,439원이다.[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및 K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기왕치료비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기왕치료비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지출한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11,038,968원(= 진료비 9,678,988원 + 약제비 1,359,98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8년간의 예상치료비 합계액이 18,070,5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한 70,996,000원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비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위 11,038,968원은 과잉치료로 부당하게 확대된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의료행위를 담당한 전문의사가 개개의 환자의 상처 부위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처치나 시술을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2. 8. 자 95카기16 결정 등 참조),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그러한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치료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과잉진료라고 쉽사리 평가할 수 없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7. 2.부터 2019. 3. 25.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진료비 9,678,988원, 약제비 1,359,9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치료비 합계 11,038,968원은 피고가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치료비가 과잉진료로 인하여 부당하게확대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지출한 위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11,038,968원(= 진료비 9,678,988원 + 약제비 1,359,98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 3) 향후치료비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 4. 1.부터 2019. 3. 30.까지 향후치료비로 2,258,815원(8년간향후치료비 합계 18,070,520원 ÷ 8년)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8년간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4. 9. 당시이미 사고일(2012. 3. 31.)로부터 8년이 지나 그 예상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러므로 그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앞서 인정한 기왕치료비 외에 추가적인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공제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4.부터 2016. 6.까지 치료비 합계 109,596,515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1) 위 109,596,515원 중 2012. 4. 21.부터 2012. 5. 19.까지 산부인과 진료비 4,806,060원과 2013. 2. 13. 안과 진료비 250,710원은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치료비 합계 5,056,770원(= 4,806,060원 + 250,710원)은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또한, 앞서 본 피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진단·치료를 받은 내역 및 기왕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받은 치료비 109,596,515원에서 위 5,056,770원을 제외한 104,539,745원(= 109,596,515원 - 5,056,770원) 중 전체 휴유장해 100% 기준 기왕증 기여도 8.52%에 해당하는 8,906,786원(= 104,539,745원 × 8.52%)을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치료비 중 경추부 및요추부 염좌 관련 치료비를 따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서만 기왕증 기여도 50%를 주장하나,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부분을 가려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공제액을 산정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8년간의 예상치료비 합계액이 18,070,5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예상치료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이어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치료비가 과잉진료로 부당하게 확대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109,596,515원 중 13,963,556원(= 5,056,770원 + 8,906,786원)을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 당시 건강 상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와 후유장애의 정도, 통원기간 및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계산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46,463,439원

나) 기왕치료비: 11,038,968원

다) 공제 후의 재산상 손해: 43,538,851원(= 46,463,439원 + 11,038,968원 -13,963,556원)

2) 위자료: 3,000,000원

3) 합계: 46,538,851원(= 재산상 손해 43,538,851원 + 위자료 3,000,000원)

####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6,538,851원(= 재산상 손해 43,538,851원 + 위자료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3. 3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김경윤, 판사 김현영